



“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”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~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팀장 손용석(6571) / 팀원 이연주(6548)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3187호

시행일자 2020. 2. 6.

수 신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
청구방법 수정(2.6)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

- 가.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12868호 (2020.1.30.)
- 나.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12975호 (2020.1.31.)
- 다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597호 (2020.2.6.)
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중 <붙임1>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수정 안내해온 바,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가. 수정내용 : 예외적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 수정

- 중증환자로 중환자실 내 단독 격리하여 치료하는 경우 삭제

나. 수정사유 : 중환자실 내에서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에 따라 불필요한 문구 삭제

*수정사항을 제외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

붙 임 :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